

인화성 물질

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



인화성 물질 취급 시
충분한 환기, 점화원 관리로
화재·폭발사고를 예방합니다.



폭발사고 사례

2025년 2월 시흥 소재 00사업장 인화성액체 드라이기로 건조 중 폭발 (부상 7명)

2023년 2월 경주 소재 00사업장 열분해유 회수를 위해 전기설비 사용 중 폭발 (사망 1명, 부상 5명)

2022년 4월 울산 소재 00사업장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내부에서 보수작업 중 폭발 (사망 2명)



핵심 안전수칙

작업 전 > 안전작업절차 마련·준수 인화성 가스 및 증기 환기

작업 중 > 방폭성능 전기 기계·기구 사용 대전방지 안전화, 제전복 착용

비상시 > 작업 중지 및 신속대피 적절한 소화설비를 통한 화재진압



관련법령

- 안전보건규칙 제311조(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)
- 안전보건규칙 제325조(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)

인화성 물질 폭발사고 예방 자체점검표

구분	점검 항목	결과	비고
④ 작업 전 준비사항 [○: 적정, △: 보완필요, ×: 부적정]			
1	취급 물질의 위험성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안전작업절차를 마련·준수하였는가?		
2	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체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였는가?		
④ 작업 중 조치사항			
3	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·기구에는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졌는가?		
4	정전기 발생을 제거·억제하기 위해 대전방지 안전화, 제전복을 착용하였는가?		
④ 비상 시 대비사항			
5	비상상황 시 작업중지 및 신속대피 할 수 있도록 근로자 교육을 하였는가?		
6	적절한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하였는가?		